

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99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0. 2. 1

발 의 자 : 김용근·최만용·이명숙·윤지상 의원
(찬성자 5인)

제안이유

- 가. 장인정신이 투철하며 공예기술 전승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공예산업 및 기능발전에 크게 공헌한 우수기능인을 대상으로 명장을 선정 지원하여
- 나. 공예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며, 공예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명장은 도자(녹청자), 금속, 화각, 장신, 나전칠기, 목공예 분야 등을 포괄하여 선정함.(안 제3조)
- 나. 명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함.(안 제4조)
- 다. 명장의 자격요건,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5조, 제6조)
- 라.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7조, 제8조)

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1부.

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예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공예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며,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인천광역시 공예명장(이하 “명장”이라 한다)”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 분야 최고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 공예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공예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.

제3조(선정분야) 명장은 도자(녹청자), 금속, 화각, 장신, 나전칠기, 목공예 분야 등을 포괄하여 선정하되 당해연도 선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.

제4조(명장의 선정) ① 인천광역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 공예명장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한다. 다만,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명장의 선정인원·선정기준 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명장의 자격요건) 명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20년 이상 공예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 자로 인천광역시에서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거주한 자
2.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자
3. 이 조례에 의한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 「기능장령법」에 따른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자

제6조(예우 및 지원) ①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“명장”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증서를 수여한다.

② 사업장에 명장 인증서를 부착할 수 있으며, 예산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명장으로서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공예산업 분야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당해연도 명장 선정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명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
2.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
3.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기능장려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2조(정의) - 제8조(명장등의 선정) - 제9조(기능전승을 위한 지원등) - 제14조(기능장려금 지급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능장려법 시행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4조(명장등의 선정) - 제6조(명장등에 대한 우대) 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자치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22조(조례)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【기능장려법】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기능인(技能人)"이라 함은 생산·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능(技能)을 가지고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2. "명장"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.
3. "우수지도자"라 함은 기능인의 양성 및 지도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공로가 현저한 자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.
4. "기능경기대회"라 함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.

제8조(명장등의 선정) ① 노동부장관은 명장, 우수지도자 기타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자를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이를 우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장, 우수지도자 기타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자의 선정과 우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기능전승을 위한 지원등)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사회에 필요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기능을 전수하는 자 및 이를 전수받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금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전직, 기능활동의 중단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허위서류의 제출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의 선정, 지급의 중단 및 회수절차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(기능장려금 지급) ① 노동부장관은 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그 분야에서의 계속종사를 통한 기능수준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기간동안 기능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【기능장령법 시행령】

제4조(명장등의 선정)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장은 20년이상 산업현장동일분야 및 직종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중에서 선정한다. 이 경우 동일분야 및 직종의 범위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.

②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지도자는 20년 이상 기능인 양성 또는 지도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중에서 선정한다.

③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선정한다.

1. 중소기업우수기능인(이하 "우수기능인"이라 한다)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선정하되,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함

2. 기능장학생 :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선정하되,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함

가. 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에서 운영하는 훈련기관의 훈련생(1년 이상 과정의 훈련생에 한한다)

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의한 고등학교의 재학생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"명장"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증서를 수여한다.

제6조(명장등에 대한 우대) ① 노동부장관은 명장 또는 우수지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예산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장려금의 지급

2. 삭제

3. 기타 노동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

② 노동부장관은 우수기능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장려금 지급

2.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

③ 노동부장관은 제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【지방자치법】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